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한 검진 및 예방사업, 재활 사업 등 단계적 사업 수행을 위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치매지원센터 기능(안 제3조)

- 주요 사업내용
 - 치매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
 - 치매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
 -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
 - 치매 등록·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 - 치매 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 - 인지건강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 - 기타 구민의 지역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등

나. 치매지원센터 이용대상을 규정(안 제4조)

-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등

다. 관리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규정(안 제5조)

- 치매의 효율적·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

-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

라. 수탁자의 의무 및 시설의 운영 · 취소에 관한 규정(안 제6조 내지 제8조)

-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운영규정
-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

마. 운영지원 및 지도 · 감독 사항을 규정(안 제9조, 제10조)

-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
-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도 · 점검하는 근거를 규정

바. 운영위원회 설치 · 구성 · 수당 등(안 제11조 내지 제13조)

- 센터의 운영관련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
-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 지급을 규정
 - 구성 : 10인 이내
 - 위원장(당연직 - 보건소장)
 -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
 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- 위원회 수당 :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 수당지급

사.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규정(안 제14조)

3. 조례안 : 따로붙임

4. 예산조치 : 예산변경으로 확보 - 사업운영비

5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7. 5. 14 ~ 2007. 6. 2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· 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(2007. 6. 7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9조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한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(이하 “치매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되,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해 설치한 치매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홍동 32-29에 설치한다. 다만, 여건에 따라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 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치매 예방사업(교육, 홍보, 상담)
2. 치매 인식개선사업(조기검진, 조기치료의 유도)
3. 치매 조기검진사업(선별검진, 정밀검진, 감별확진 지원)
4. 치매 등록·관리사업(사례관리,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)
5.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(저소득 환자 투약치료, 본인 부담금 지원)
6. 치매 지역 조사사업(치매 관련 자원실태, 치매 관련 주민요구도 등)
7. 치매지원센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,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
8.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(의뢰·지원체계구축, 시설종사자교육 등)
9. “인지건강센터” 운영(인지재활, 치매예방, 기억증진 프로그램 등)
10.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

제4조(이용대상) 치매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5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 ①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·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 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수탁 받은 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매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수탁자는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.
3.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설의 운영) ①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,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 · 운영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센터의 관리 ·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탁의 취소)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와 제10조의 지도 · 감독관련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때
 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
 3.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-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

때에는 사업비, 각종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운영비 지원)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·운영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시설,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·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)를 둔다.

1.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3. 치매지원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,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
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자원봉사)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·활용하고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역보건법」·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